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4조에 의하여 설치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의 운영목적 및 운영지침을 명시하고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26.)

제2조(기능)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는 사회적 필요와 글로벌 시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품성, 지식, 기능 등의 교양을 내실 있게 교육함을 운영의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5.26.)

②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는 영어, 인성, 창의력 개발에 중점을 두며, 분야별 능력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업과 사회가 인정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는데 역점을 둔다.(개정 2015.05.26.)

제3조(운영지침)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의 운영목적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개정 2015.05.26.)

1. 교양과목 개설 및 시행 과정에서 학생의 수업권을 중시한다.
2. 다양하고 적절한 교양과목을 사회적 필요와 학생의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한다.
3. 교양과목 수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임교원은 인성세미나를 포함한 교양과목중 연간 1강좌 이상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3.18.)

제 2 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조직)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에 학장과 행정실장을 두며,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내에 교양교육연구센터, 생명과나눔센터를 운영한다. 각 센터의 목적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5.03.18., 2015.05.26., 2016.01.26., 2018.12.20.)

②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에 주임교수, 교양과목책임교수, 겸무교수, 자유전공

3-3-15~2 제3편 행정

주임교수, 자유전공 소속 교원과 행정직원을 둔다.(개정 2015.05.26.)

제5조(행정실장)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에 행정실장 1인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급(과장) 이상의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15.05.26.)

②행정실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자유전공 주임교수) 자유전공 주임교수는 자유전공학부 소속 교원 중에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제7조(주임교수) ①주임교수는 인문, 사회, 자연, 예·체능 4개영역에 영역별 1명씩 둔다.

②주임교수는 교양교육영역 관련 학과 전임교원 중에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③주임교수는 교양교육영역위원회 영역별 위원장을 겸한다.

④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주임교수는 교양영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교육내용, 교육방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하고 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관련 학과와 협의하여 교강사 배정, 수업관리, 교과과정의 검토 및 그에 대한 제안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⑥각 주임교수의 관련 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주임교수	관련 교과목
인문주임	인문계열 개설 교양과목
사회주임	사회계열 개설 교양과목
자연과학주임	자연, 이공계열 개설 교양과목
예·체능주임	예·체능계열 개설 교양과목

제8조(겸무교수)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운영의 책임성 강화와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겸무교수를 둔다.(개정 2015.05.26.)

②총장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과 행정실장을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겸무교수로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③총장은 교양교육영역위원회 위원장(주임교수)을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겸무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④겸무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교양과목책임교수)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는 개설된 교양과목에 책임교수를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②교양과목책임교수는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③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교양과목책임교수는 해당 교양과목의 교육목표, 교육방법 등을 제시하고 교재개발, 교강사 배정, 성적평가 등 교과목 운영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장 교양과목 편성

제10조(편성원칙) 교양교육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각 학문분야에 기초가 되는 기초지식과 탐구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학문분야별 기초교육과 글로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외국어 능력을 계발한다. (개정 2015.03.18.)

제11조(편성시기) 교양교육과정의 편성 시기는 시행 직전 학년도 제2학기 종강 전으로 한다. 다만, 교무운영상 필요한 경우 시행 학년도 제1학기 종강 전에 다소의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제12조(편성절차) ①교양교육과정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총괄한다.(개정 2015.05.26.)

②교양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양교육영역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05.26.)

제13조(영역구분) ①교양교육과정은 기초교양, 융합교양, 일반선택, 계열교양 등 4개영역으로 구분하고 단과대학 또는 계열별 교육목표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학점을 배분한다. (개정 2015.03.18.)

②기초교양은 가천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따라 대학교육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교육과정으로 인성과 리더십, 의사소통, 창의와 사고, 소프트웨어기초 4개영역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03.18., 2018.05.29.)

③융합교양은 기초학문 분야의 교과목을 토대로 2개 이상의 학제적 성격의 ‘컨텐츠상의 융합교과목’ 또는 학생들의 고차원적 사고능력 함양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정상의 융합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인간과 예술, 사회와 역사, 자연과 과학, 세계와 언어 4개영역으로 구분한다.(개정 2015.03.18., 2018.05.29.)

3-3-15~4 제3편 행정

④일반선택은 다양한 학문의 내용을 습득하고 최신 트렌드를 이해하여 자신의 전공과 연결하여 확장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지적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다.(개정 2015.03.18., 2018.05.29.)

⑤계열교양은 각 대학의 학부(과)별 전공이수를 위하여 사전에 습득하고 있어야 할 기초학력을 배양하는 교육과정으로 학문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03.18.)

제14조(개정주기) 교육내용의 학문적 사회적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교양과목의 개편은 1년 주기로 가능하도록 하여 사회적 수요와 학문적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한다.

제15조(교양과목 폐지)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와 교양교육영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정한다. (개정 2015.03.18., 2015.05.26.)

②교양과목 강좌의 폐강기준은 수강정원의 60%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교양과목 개발) ①신규교양과목 개발은 교양교육영역위원회의 주관아래 교수, 학과별 신청을 통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양과목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개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②교양과목 개발과 관련하여 과목 및 교재개발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재가를 받아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5.05.26.)

③신규교양과목 개발과 관련하여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양과목으로 수용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제17조(심화과목 편성) ①교양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화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②심화과목은 교양교육영역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정한다.(개정 2015.05.26.)

제 4 장 운 영

제18조(개설원칙) ①교양교육과정은 교육목표, 교육효과 및 수강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과목수 및 강좌수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교양교육과정 개설과목수 및 강좌수는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정한다.(개정 2015.05.26.)

제19조(개설주체) 교양과목의 개설주체는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된다.(개정 2015.05.26.)

제20조(교양과목책임교수) ①교양과목은 전임교원이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교양과목책임교수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③교양과목책임교수는 당해 교양과목의 운영에 책임을 진다.

④신규교양과목 개발사업에 선정된 교양과목개설 연구책임교수는 해당 과목을 4회 이상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개설주기) ①교양과목의 교육목표, 교육효과, 교육과목의 수준, 교강사의 확보 및 수강수요 등을 고려하여 개설주기를 정한다.

②교양과목은 매학기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수강정원) 영역 성격, 교양과목의 내용, 수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강사의 확보, 학생수요에 따라 수강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교양과목정보제공)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은 수강생들에게 교양과목의 개요, 수업계획, 성적평가방법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하여 학생들이 강의에 대한 예비지식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5.26.)

제 5 장 평 가

제24조(교양교육과정평가)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은 교육교육의 내실화와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교양교육을 위해 교양교육과정 운영전반에 대해 자체 진단하는 연차평가를 매 학년도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05.26.)

②평가결과 우수교과목에 대하여는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 6 장 위 원 회

제25조(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의 교육목표, 발전계획, 학사운영, 교육과정, 기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05.26.)

②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③위원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 메디컬교양학부장과 주임교수, 교무

3-3-15~6 제3편 행정

처장, 기획처장,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행정실장, 교무처 학사지원팀장으로 하며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8., 2015.05.26.)

④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의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정한다.

⑦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발전계획 수립(개정 2015.05.26.)

2.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중점업무 계획(개정 2015.05.26.)

3. 교양교육과정 및 편성 및 운영

4. 교양과목 개·폐설

5. 교양교육영역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

6. 기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개정 2015.05.26.)

⑧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6조(교양교육영역위원회) ①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의 교양교과목의 개선방안과 교과목 심의를 위해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교양교육영역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5.26.)

②교양교육영역위원회는 인간문화교양교육위원회, 사회역사교양교육위원회, 자연과학교양 교육위원회, 예·체능교양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

③영역별 위원장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05.26.)

④위원은 가천리버럴아츠칼리지 대학장이 임명하며 4인 이내로 한다.(개정 2015.05.26.)

⑤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해당영역의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강좌의 설치, 증감여부 논의

2. 해당영역 교양과목의 교육내용 및 개선책 강구

3. 해당영역 교양과목의 개·폐설

4. 해당 교양영역의 교·강사 배정 총괄

5. 해당영역 교양과목 책임교수가 상정하는 안건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0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